

대 외 비 (사외비)

----- 목 차 -----

제 1조	목적
제 2조	적용범위
제 3조	권한
제 4조	구성
제 5조	위원장
제 6조	소집
제 7조	소집권자
제 8조	소집절차
제 9조	결의방법
제10조	부의사항
제11조	의사록
제12조	규정의 제·개정
제13조	간사
제14조	부록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 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3조 권한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한하여 의결한다.

제 4조 구성

1.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제 5조 위원장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위원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 6조 소집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 7조 소집권자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8조 소집절차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3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9조 결의방법

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2. 위원회는 경영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경영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10조 부의사항

1.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본 조에서 적용되는 자기자본 및 자산 총액은 최근 사업연도 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1.1 경영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 2.5%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에 관한 사항
- 자산총액 2.5% 이상의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 2.5% 이상의 신용공여
: 채무인수, 연대보증, 담보제공, 책임준공, 대여 등
- 기존 자기자본 2.5% 이상의 신용공여의 연장
- 자기자본 5% 이상의 신규 자금 차입
- 기존 자기자본 5% 이상 자금 차입 연장
- 사모사채의 발행

1.2 기타 사항

- 국내외 지사,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시 또는 의사록 제출이 필요한 모든 재무사항 및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11조 의사록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2조 규정의 제·개정

1.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 및 위원회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1.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2. 위원회 간사는 경영관리담당 팀장 또는 임원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4조 부록

1. 시행일

- 이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제정·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3년 3월 2일부터 개정·시행한다.